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29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권향엽・이병진・장종태

조계원 • 이기헌 • 염태영

양부남 • 한정애 • 주철현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기회발전투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또한 지방세 감면이가능하나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산업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친환경산업 관련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농수산물,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4항제13호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4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환경산업과 관련된 업종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 다. 「주택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2호에 따른 순환경제
 - 마.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산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한 감면) ① ~ ③ (생 략)	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
	<u>o</u>)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	4
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	
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	
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친환경산업과 관련
	<u>된 업종</u>
	<u>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u>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u>에너지</u>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다. 「주택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 환경주택

 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순환경제

<u>마. 「자연환경보전법」 제2</u> 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바.「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환경친화적 자동차

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
 호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
 색산업

<u>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u> 하는 친환경산업

⑤ ~ ⑨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